

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전용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전용균,백선아,이상기

김지훈,신민철,김현택

이창희

1. 제안이유

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확대 정비하고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확대 정비(안 제8조)

나. 방범시설 설치기준 마련(안 제8조의2)

다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(안 제12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##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
4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
5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

제8조의2제1항 중 “제8조제4호”를 “제8조제6호”로, “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은”을 “등 설치 지원 대상은”로, “선정한다”를 “선정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의 기준에 적합하고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포상)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·단체·공무원 등에게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)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제8조의2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<u>제8조제4호에</u> 따른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은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<u>선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 방법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p>	<p>제8조(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</u></p> <p>4. <u>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</u></p> <p>5. <u>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</u></p> <p>6.·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8조의2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</p> <p>① ----- <u>제8조제6호</u>-----</p> <p>----- <u>등 설치 지원 대상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<u>방법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</p>

에 따른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 (생 략)

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용  
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 
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  
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 
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  
는 방법시설은 「산업표준화  
법」의 기준에 적합하고 재난  
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  
부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  
된 제품이어야 한다.

제12조(포상) 시장은 범죄예방 환  
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·  
단체·공무원 등에게 「남양주시  
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 
있다.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확대정비(제8조)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·단체 등의 포상(제12조)이 해당됨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추진사업의 확대 및 포상 등 소요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 수반 요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생략함

### 4. 작성자

도시국 건축과장 서동환